
입찰공고문

1. 사업개요

- 가. 사업명 : 개인신용평가모형(CSS) 재구축
- 나. 사업내용 : 제안요청서 참조
- 다. 사업기간 :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
- 라. 사업예산 : 400백만원 이내(부가가치세 및 제반경비 포함)
 - 신용평가모형 재구축 : 115백만원* 이내
 - * CB정보 및 대안정보 가명결합 비용 포함
 - 신용정보 서비스 이용 : 연간 285백만원 이내
- 마. 사업시행 부서 : 한국주택금융공사 리스크관리부

2. 입찰 및 계약방법

- 가. 입찰방법 : 일반경쟁입찰
- 나. 계약방법 :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

3. 입찰참가자격(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)

- 가. 한국주택금융공사 계약규정(이하 계약규정)* 입찰자격 충족자
 - 계약규정 제31조(경쟁입찰의 참가자격)에 의한 유자격자
 - 계약규정 제52조(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) 및 제53조(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)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
- *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(www.hf.go.kr) 조회 가능(공사소개 내 공사내규)
- 나. 공고일 현재 최근 3년 이내에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신용평가모형(ASS, BSS) 구축 경험을 보유하고 개인 신용정보의 제공이 가능한 자

- 다. 최근 3년 이내에 국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신용평가모형 구축 경험이 있는 책임연구원(입찰참가자의 직원)을 투입할 수 있는 자
- 라.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(이하 국가계약법)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

4.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

- 가.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며, 현금 또는 계약규정에서 정한 보증서 등으로 납부
- 나. 공사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 납부를 면제*할 수 있으며, 입찰보증금을 면제 받은 자는 공사귀속사유 발생 시 입찰보증금 납입을 확약하는 지급각서 제출

* 한국주택금융공사 계약규정 제114조(입찰보증금) 제4항 제3호 해당자(별첨자료 참조)

- 다.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사에 귀속

5.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

- 가. 마감일시 : [2022년 8월 12일 오후 5시]
- 나. 제출장소 : 한국주택금융공사 리스크관리부(부산광역시 남구 문현 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12층)
- 다. 제출방법 :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*
(전자우편 주소 : happy84@hf.go.kr)

* 공사 지방이전으로 인하여 방문접수와 등기우편 접수를 모두 허용하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는 경우 접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, 접수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간주

- 라. 제출서류

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

- ② 기술제안서 10부
- ③ 가격제안서 및 세부내역서 출력본 각 1부(밀봉)
 -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(나라장터)에 입력한 입찰가격과 일치 요망
- ④ 법인등기부등본,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
- ⑤ 사용인감계, 위임장(대리인의 경우), 제출대리인 재직증명서 각 1부
- ⑥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(원본대조필)
- ⑦ 입찰보증금(밀봉, 전부 또는 일부 면제 시 지급각서)
- ⑧ 국세,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
- ⑨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제출토록 명시한 서류(사본은 원본대조필)

6. 낙찰자 결정방법

- 가. 협상에 의한 계약업무세칙 제9조제1항에 따라 “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(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)이하인 자”로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표에 의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(80점)의 85%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(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 제1항)
- 나. 기술능력평가점수, 입찰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순차적인 협상에 의해 낙찰자를 정함
- 다. 제안서의 평가요소 및 협상방법 : 제안요청서 참조

7. 협상일시 : 추후 별도 통지

8.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

- 가. 게시장소 :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(www.hf.go.kr)
조달청 나라장터(www.g2b.go.kr)
공공기관 알리오(www.alio.go.kr)
- 나. 게시자료 : 제안요청서

9. 기타 안내사항

- 가. 입찰 참가자격 : "제안요청서"에 정하는 바에 의함
- 나. 입찰설명회 : 없음(세부사항은 "제안요청서"에 의함)
- 다. 관계서류 등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은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,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
- 라.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에 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음
- 마.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- 바. 실적증명용 계약서의 사본 등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"원본 대조필" 후 제출
- 사. 제안서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입찰참가제한,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할 수 있음
- 아.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업체 간 담합, 한국주택금융공사 직원의 금품·향응수수 등 청렴성을 저해하는 부패행위가 발생된 경우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- * 부패행위신고 : 한국주택금융공사 감사제보센터(공사 홈페이지 접속 → 하단의 "감사제보센터") 신고
- 자. 기타사항 문의처 : 한국주택금융공사 리스크관리부(051-663-8587)

2022. 8.

 **한국주택금융공사**

[별첨] 한국주택금융공사 계약규정 발췌

□ 입찰참가자격 제한

제52조(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) ①소관부서장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(이하 “부정당업자”라 한다)에 대해서는 「국가계약법」 제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.

②소관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대해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관부서장에게 통지해야 한다.

③주관부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제재확인서[별지 제9호 서식]를 작성하여 국가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해야 한다. 이 경우 주관부서장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개시일 전까지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고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.

제53조(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) ①소관부서장은 「국가계약법시행령」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.

②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하여는 「국가계약법시행령」 제12조제6항을 준용한다.

□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

제114조(입찰보증금)

① ~ ③ - 생략 -

④소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다.

3. 「국가계약법시행령」 제37조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는 다음 각 호의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

가.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

나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

다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 또는 출자(법률의 규정에 따라 귀속시킨 경우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한 법인

라. 「농업협동조합법」에 의한 조합·조합공동사업법인 및 그 중앙회(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),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에 의한 어촌계·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, 「산림조합법」에 의한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,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

마. 「건설산업기본법」·「전기공사법」·「정보통신공사법」·「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·「골재채취법」 또는 「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」 등의 법령에 따라 허가·인가·면허를 받았거나 등록·신고 등을 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.

1)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·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자(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)

2)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

바. 「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」 제32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·녹색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

사. 기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